

2021년도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와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「2021년도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」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1. 03. 12. (재)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- 제주다양성영화 제작비 일부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, 제주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영상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수 영화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영상문화 도시로의 발전토대를 만들어나가고자 함

2. 지원개요

- 지원내용 : 순제작비 10억 원 미만의 제주다양성영화(독립영화, 예술영화, 다큐멘터리영화 등) 제작비 일부 지원
- 지원금액

구분	지원총액	편당 지원금액	비고
장편	2억 원	최대 1억 원 이내 차등지급	상영시간 60분 이상 (옴니버스 포함)
단편	7천만 원	최대 2천만 원 이내 차등지급	상영시간 60분 이내
신규		최대 5백만 원 이내 차등지급	본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지 않았던 단체 또는 개인

※ 각 부문에 해당작이 없거나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통합하여 지원가능

※ 적격자(단체)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

○ 지원자격

- 당해 사업연도(2021년 1월 1일)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제작 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창작자(제작자, 메인 감독, PD, 작가에 한함)

※ 도내 지역 또는 학교 출신자, 명예도민증 또는 재외도민증 소지자 포함

- 시나리오 및 기획이 완료된 작품으로써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
- ※ 팀 구성 신청 가능하며 기업·개인별 1개 프로젝트만 신청 가능

3.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

○ 지원조건

- 협약종료일(2021년 12월 20일)까지 정산 행정처리를 완료하고, 사업 종료일(2021년 12월 31일)까지 제작 완성 후 완성본 제출
- ※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(이하 진흥원)과 상호협의를 한 경우, 1회에 한하여 완성본 제출기한 연장 가능(별도 신청서와 함께 해당 기간만큼 이행보증 보험을 갱신하여 추가 제출)
- 지원 결정 금액의 10%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
- 작품 완성 후 1년 이내에 국내외 영상, 영화제에 1회 이상 출품
- 홍보자료 및 상영(방영)본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의 지원작인 사실 표기

○ 신청 및 심사 제외 대상

-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신청자(사)의 작품
- 제주특별자치도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제작비 지원을 받은 경우(중복지원 불가)
- 신청일 기준 국세·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)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
- 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금, 환수금 등이 미납 중인 경우
- 진흥원 지원사업에서 합당한 이유 없이 제작을 포기하는 경우
-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※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4. 보조금 교부·집행·정산

○ 보조금 교부 절차 및 방법

- 수행기업(자)은 지원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흥원과의

- 협약체결, 이행보증보험증권(지원금의 100%) 제출을 완료해야 함
- 보조금은 2회 분할 교부하고, 1차 교부 이후 과제수행 및 예산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속지원 여부 또는 재심사 대상 작품 결정
- ※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중간보고서 사전 제출
- 수행기업(자)은 보조금 교부 시 제반서류 및 필요한 진행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
- 본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별도 신청에 의해 교부. 단, 보조금 교부 후 환수 사유 발생 시에는 원금 환수와 별도의 제재조치 있음

○ 보조금 집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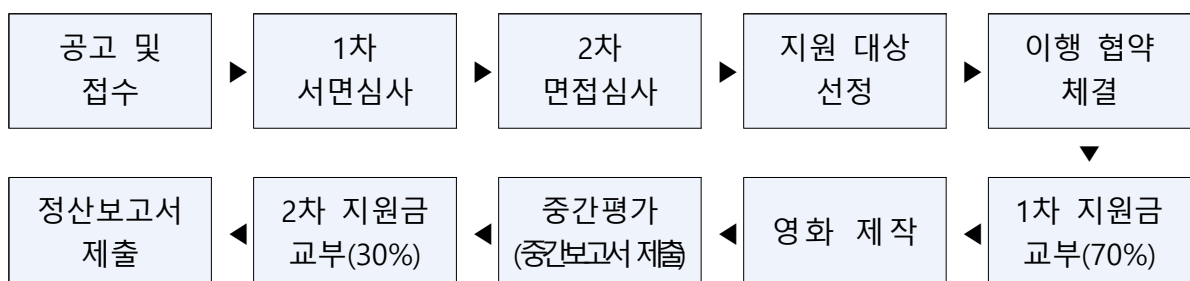
- 보조금은 별도 통장으로 개설·관리하여야 하며, 해당 사업비 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지출(사업비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방식 제외)
- 진흥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하여야 함
- 진흥원은 수행기업(자)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고, 이 경우 수행기업(자)은 성실히 응해야 함

○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

- 수행기업(자)은 협약종료일 이내에 진흥원이 요청하는 양식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제출서류 : 결과보고서, 세부집행내역서, 증빙자료, 회계검증보고서, 결과 영상물 등

※ 신청기업(자)은 정산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 집행·수입 내역을 회계법인 (또는 개인회계사)의 검증을 필한 후 제출(지원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)

5. 지원절차



6.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

○ 진행일정

- 공고기간 : 2021년 03월 12일 ~ 04월 06일
- 접수기간 : 2021년 03월 18일 ~ 04월 06일

○ 접수방법 : 방문(평일 09:00 ~ 18:00) 또는 우편 접수

-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(<http://www.jejufc.or.kr>)에서 구비서류와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지정된 양식(별첨자료 참조) 및 요령에 따라 작성
- A4 출력물(제본 금지)과 별도로 원본 파일은 담당자 메일로 별송

○ 제출서류

제출서류	부수	비고
지원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	1부	소정양식 [붙임 1], [붙임 2] 소정양식 외의 내용은 별첨 가능
최종본 시나리오(대본)	1부	다큐멘터리영화의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가원고도 가능
포트폴리오(해당자에 한함)	각 1부	감독의 이전 작품(동영상 파일), 공동작품의 경우 역할 명기 2개 작품 이내에 한함
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	각 1부	
사업자등록증, 법인인감증명서	각 1부	개인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(본인서명확인서 가능) 각 1부 제출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	각 1부	소정양식 [붙임 3]

※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
※ 제출서류는 신청기업(자)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,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접수처 : 제주시 신산로82(일도이동)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2층 사업팀 사무실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담당자 앞

※ 문의 : 영상산업팀 송명준 ☎ 064) 735-0601 ✉ chosinga@ofjeju.kr

7. 선정방법 및 기준

- 심사일정 : 2021년 4월중 (※ 진흥원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)
- 심사방법
 - 1차 : 서류심사(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)
 - 2차 : 전문가 5인 이내 구성된 심사의원의 면접심사 및 질의응답
- 심사기준 : 작품 기획의 우수성, 사업 수행역량, 예산의 적절성, 결과물 활용계획 등

심사기준	심사항목
작품 기획의 우수성(30점)	- 작품 컨셉, 스토리, 시나리오 등 작품 기획의 우수성 - 제주 소재의 활용성(문화 및 자연의 반영도, 활용도 등) - 작품의 전체적인 짜임새와 완성도의 적합성
사업 수행 역량(25점)	-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실현 정도(추진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) - 작품 제작일정의 현실성 - 제작사 및 참여 인력의 제작 능력 등 전문성 보유 정도
예산의 적절성(30점)	- 예산 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- 집행계획의 현실성 및 투명성
결과물 활용 계획(15점)	- 결과물에 대한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- 마케팅 전략 및 향후 지속적인 수익화 방안
우대가점(5점)	- 진흥원 시나리오 공모전 입상 작품(입상자료 제출 시)

- ※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신청예산 한도 내 지원액 산정
- ※ 제시한 제안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

8. 기타사항

- 결과물 귀속
 - 지식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. 단, 아래의 활용 권한을 진흥원에 인정함
 -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 목적에 한하여 온·오프라인 무료 사용(단, 사용 전 상호 간 협의 완료 후 진행)
 - 제주특별자치도 및 진흥원에서 주최(관)하는 행사 및 홍보 등에 활용
 - 진흥원 시설 운영에 활용(상영관, 전시, 정보실 등)

- 기타 지원 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, 영상물·책자 발간 등 진흥원 사업과 관련한 활용 등
- 시사회 개최 등 진흥원이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
- 개봉(방영) 후 제출한 현장 스틸컷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(보도 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등)

○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기업(자)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
- 본 사업의 신청,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(자), 수행기업(자)의 책임으로 봄
- 본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(자) 부담
-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(이자포함),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
 - 협약기한 내 제작을 중단·포기하거나 사업종료일까지 완성작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(단, 상호 합의한 경우 1년 연장하여 제출)
 -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
 -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- 법령의 규정,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진흥원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
 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(산하 유관기관 포함)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(지원금의 재원이 국고, 기금, 제주특별자치도 외 지자체, 민간단체 지원금인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)
 - 결과보고서(중간보고서 포함) 제출 및 보조금 정산 등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
 - 불성실한 제작,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
 - 지원 작품(작가 포함)이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거나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 - 기타 제주영상·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

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

- 위 사유 등으로 계속해서 협약유지가 어려울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지원사업 제재조치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

※ 과제가 중단된 경우, 향후 2년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

※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(자), 수행기업(자)의 책임으로 봄

※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